



1. 기초적 사실관계

가. 등록상표

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2009. 12. 2./ 2013. 8. 28./ 제991492호

2) 구성: 하루

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열패드

4) 권리자: 피고

나. 선출원상표

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2009. 12. 1./ 2011. 6. 9./ 제868218호

2) 구성: 상쾌한 하루

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열팩, 의료용 냉팩

2. 판결요지

선출원상표 “상쾌한 하루” 중에서 ‘하루’ 부분은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다. ① 먼저 ‘하루’라는 문자부분이 주지, 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.

② 그리고 선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5음절에 불과한데, 그 중에서 ‘하루’라는 2음절의 문자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3음절의 ‘상쾌한’과의 결합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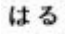
③ 나아가 ‘하루’라는 문자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‘상쾌한’이라는 문자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거나,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.

‘상쾌한’이라는 문자부분은 ‘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’라는 뜻으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용 온열팩, 의료용 냉팩과 관련하여 신체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에 의한 통

통증완화에 따라 사용자가 받는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그친다. 따라서 '상쾌한' 부분 자체로 통증완화라는 지정상품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직감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. 또한 '하루'라는 문자부분도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통증완화라는 효능의 '지속기간'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직감시킨다고 볼 수 없다. 이와 같이 양 구성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고, 그 사이에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.

선출원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일 당시 '하루'라는 문자부분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. 오히려 '상쾌한'이라는 문자부분이 이어오는 '하루'라는 문자부분과 관념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'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한 하루'라는 일체화된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인다.

이에 선출원상표와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건대,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동일,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출처의 오인,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이는 피고가 2009. 12. 2. 등록상표 "하루"를 출원하여 2013. 8. 28. 등록받았고,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등록상표와

선출원상표가 공존하여 왔으며, 또한 위 등록번호 제567918호의 "  " 상표와 선출원

상표는 약 8년간 공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.

첨부: 특허법원 2019. 4. 12. 선고 2018허8296 판결

변리사 24년/변호사 16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